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충청북도결산검사 대표위원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
이 길하 의원입니다.

바로전 충청북도교육청 신 재철 관리국장으로부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본의원과 성 기덕 의원,
공인회계사 2명, 유경험자 2명등 6명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과 성 기덕 위원은 교육정책적인 업무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김 창섭 위원과 박 효순 위원은 재산 및 물품
관리와 세입전반에 대하여,

유경험자인 정 천현 위원과 이 종선 위원은 세출 전반에 대하여,

1997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6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 결산작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표시된 분야별 결산 검사내용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결산 검사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액중 유보액이 발생 한 사항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중 유보액 내용을 보면은 본청 9건 4,976만 4천원, 지역교육청 13건 6,613만 9천원으로 총 22건 1억 1,590만 3천원의 유보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성립후 운영계획의 변경이나 법규의 개폐로 인하여 세출예산중 유보액이 예견되면 추가경정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유보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종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96년도 본청 세출예산현액 20%이상 불용액이 13건에 1억 2,067만 6천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실소요액 또는 지출 추정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하고, 예산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행에 원활을 도모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도중 과부족액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공사발주 지연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세출예산이 책정되면 즉시 공사발주의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 가급적 당해연도내에 시공 완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성립후 사업을 즉시 발주 하였으면 설계상 공사기간으로 보아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설계용역 등 지연발주 함으로 인하여 사고 이월 조치한 시설공사가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미리 발주준비를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연도내에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양개년 또는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가급적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 운영의 부적정 입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경비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을 명시하여 이월하는 제도로 동명시이월비는

다시 그 익년도로 사고이월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에도 본청 명시이월사업중 1건 2억 6,171만 6천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중 9건 4억 1,560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신중하게 조치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에 임하였다고 하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흡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전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